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7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1451 자동차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1. [redacted]시장
	2.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9. 3. 20.
판 결 선 고	2019. 4. 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redacted]시장에 대한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피고들에 대한 자동차말소등록일 소급적용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별지 2 목록 기재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redacted]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7

주문 제2항 및 피고 경주시장이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과세처분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말소등록일을 폐차입고일로 소급적용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redacted]시장은 2018. 4. 10. 원고에게 '원고가 소유한 자동차 6대(B, C, D, E, F,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1997. 12. 1.부터 2014. 12. 1.까지 부과한 취득세, 면허세, 자동차세 및 교육세(이하 '자동차세 등'이라고만 한다)를 체납하였으므로 체납세액 합계 18,967,040원을 2018. 10. 30.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고지를 하였다.

나.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이하 '피고 [redacted]구청장'이라 한다)은 2018. 10. 22. 원고에게 '원고가 소유한 B 자동차에 관하여 별지 목록 2 기재와 같이 1992. 1. 2.부터 2004. 6. 1.까지 부과한 자동차세 등을 체납하였으므로 체납세액 합계 775,610원을 2018. 10. 31.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고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6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년경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다가 1998년경 위 사업을 폐업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들을 폐차업체에 폐차 의뢰·입고하였고, 당연히 폐차절차가 완료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7. 1.경 뒤늦게 이 사건 자동차들에 대한 말소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고, 피고 [redacted]시장에게 이 사건 자동차들에 대한 멸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7

인정 신청을 하여 2017. 3. 16. 그로부터 멸실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6조의4 제5호, 같은 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6조의2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멸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redacted]시장이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1997. 12. 1.부터 2014. 12. 1.까지 원고에게 한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이하 '제1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및 피고 대구북구청장이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1992. 1. 2.부터 2004. 6. 1.까지 원고에게 한 자동차세등 부과처분(이하 '제2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 중 제1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피고 [redacted]시장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등 참조).

한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처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아직 외부적으로 성립되지 않은 처분이나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7

통지되지 않은 경우 등은 비록 원고가 그 내용을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제소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누195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또한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거나(구 지방세법 제51조 제1항)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하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구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다. 판단

1) 먼저 유효한 제1 부과처분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가 제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93. 12. 8. [redacted]시 G건물 H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이래 여러 차례 그 주소지를 이전하였는데, 2000. 6. 12., 2011. 6. 27., 2004. 6. 18., 2004. 9. 24., 2005. 3. 18., 2006. 1. 19., 무단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기도 한 사실, ② 피고 [redacted]시장이 1998년경부터 작성한 지방세 체납자 관리카드에는 '피고 [redacted]시장이 원고에게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그 고지서가 반송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 이를 공시송달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redacted]시 I장의 2010. 12. 31.자, 2011. 6. 30.자 및 같은 해 12. 30.자 공고에는 '원고에 대한 2010년 12월분, 2011년 6월분, 2011년 12월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redacted]시장은 구 지방세법 제51조의2 및 제52조에서 정한 교부·우편 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제1 부과처분을 적법하게 통지하였다 할 것이므로 유효한 제1 부과처분이 있었다 할 것이다.

2) 한편 을가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7

고는 2017. 2.경 직접 피고로부터 자동차세 등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안내를 받은 사실, 그 이후인 2018. 4. 11., 같은 해 5. 24. 공공기록정보 등록예고서, 체납안내문 등을 송달받고 피고와 체납액의 납부문제를 상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원고가 이미 2017. 1.경 피고 [redacted]시장으로부터 자동차세 등이 미납되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소장 제4쪽)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2018. 5. 24.경에는 제1 부과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원고는 그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 11. 20. 피고 [redacted]시장에 대하여 제1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4. 제2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본안전 항변

피고 [redacted]구청장은 원고가 제2 부과처분의 마지막 부과처분이 있은 날인 2004. 6. 1.부터 1년을 훨씬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등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7

그런데 제2 부과처분이 구 지방세법 제51조의2 및 제52조에서 정한 교부·우편 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단순히 송달에 관한 자료가 보존기간의 경과로 현존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함부로 그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2 부과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지 않은 이상 비록 원고가 그 내용을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제소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redacted]구청장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2 부과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한편 제2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5. 이 사건 소 중 자동차말소등록일의 소급적용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7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과세처분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말소등록일을 폐차입고일로 소급적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redacted]시장에 대한 제1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 피고들에 대한 자동차말소등록일 소급적용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redacted]구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만호

판사 사공민

판사 김웅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7

별지 1

목 록

구분	자동차명	과세처분일자	과세내역				합계금
			취득세	면허세	자동차세	교육세	
1		1997-12-01			105,840	31,750	137,590
2		1998-06-01			105,840	31,750	137,590
3		1998-12-01			19,130	5,730	24,860
		합계			230,810	69,230	300,040
4		1997-12-01			119,840	35,950	155,790
5		1998-06-01			119,840	35,950	155,790
6		1998-12-01			119,840	35,950	155,790
7		1999-06-01			104,860	31,450	136,310
8		1999-12-01			104,860	31,450	136,310
9		2000-06-01			104,860	31,450	136,310
10		2000-12-01			104,860	31,450	136,310
11		2001-06-01			104,860	31,450	136,310
12		2001-12-01			57,670	17,300	74,970
13		2002-06-01			57,670	17,300	74,970
14		2002-12-01			52,430	15,720	68,150
15		2003-06-01			52,430	15,720	68,150
16		2007-12-01			52,430	15,720	68,150
17		2008-06-01			52,430	15,720	68,150
18		2008-12-01			52,430	15,720	68,150
19		2009-06-01			52,430	15,720	68,150
20		2009-12-01			52,430	15,720	68,150
21		2010-06-01			52,430	15,720	68,150
22		2010-12-01			52,430	15,720	68,150
23		2011-06-01			52,430	15,720	68,15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7

구분	자동차명	과세처분일자	과세내역				합계금
			취득세	면허세	자동차세	교육세	
24		2011-12-01			52,430	15,720	68,150
25		2012-06-01			52,430	15,720	68,150
26		2012-12-01			52,430	15,720	68,150
27		2013-06-01			52,430	15,720	68,150
28		2013-12-01			52,430	15,720	68,150
29		2014-06-01			52,430	15,720	68,150
30		2014-12-01			52,430	15,720	68,150
	합계			-	1,890,470	566,940	2,457,410
31		1998-06-01			197,560	59,260	256,820
32		1998-12-01			197,560	59,260	256,820
33		1999-06-01			179,600	53,880	233,480
34		1999-12-01			179,600	53,880	233,480
35		2000-06-01			179,600	53,800	233,400
36		2000-12-01			179,600	53,880	233,480
37		2001-06-01			179,600	53,880	233,480
38		2001-12-01			98,780	29,630	128,410
39		2002-06-01			89,800	26,940	116,740
40		2002-12-01			89,800	26,940	116,740
41		2003-06-01			89,800	26,940	116,740
42		2007-12-01			89,800	26,940	116,740
43		2008-06-01			89,800	26,940	116,740
44		2008-12-01			89,800	26,940	116,740
45		2009-06-01			89,800	26,940	116,740
46		2009-12-01			89,800	26,940	116,740
47		2010-06-01			89,800	26,940	116,740
48		2010-12-01			89,800	26,940	116,740
49		2011-06-01			89,800	26,940	116,74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7

구분	자동차명	과세처분일자	과세내역				합계금
			취득세	면허세	자동차세	교육세	
50		2011-12-01			89,800	26,940	116,740
51		2012-06-01			89,800	26,940	116,740
52		2012-12-01			89,800	26,940	116,740
53		2013-06-01			89,800	26,940	116,740
54		2013-12-01			89,800	26,940	116,740
55		2014-06-01			89,800	26,940	116,740
56		2014-12-01			89,800	26,940	116,740
		합계		-	3,008,300	902,390	3,910,690
57		1997-12-01			117,440	35,230	152,670
58		1998-06-01			117,440	35,230	152,670
59		1998-12-01			117,440	35,230	152,670
60		1999-06-01			102,760	30,820	133,580
61		1999-12-01			11,820	3,540	15,360
		합계		-	466,900	140,050	606,950
62		1998-06-01			119,840	35,950	155,790
63		1998-12-01			44,650	13,390	58,040
		합계		-	164,490	49,340	213,830
64		1997-12-01			196,790	59,030	255,820
65		1998-06-01			196,790	59,030	255,820
66		1998-12-01			196,790	59,030	255,820
67		1999-06-01			178,900	53,670	232,570
68		1999-12-01			136,250	40,870	177,120
		합계		-	905,520	271,630	1,177,150
69		1997-12-01			119,840	35,950	155,790
70		1998-06-01			119,840	35,950	155,790
71		1998-12-01			119,840	35,950	155,790
72		1999-06-01			104,860	31,450	136,31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7

구분	자동차명	과세처분일자	과세내역				합계금
			취득세	면허세	자동차세	교육세	
73		1999-12-01			104,860	31,450	136,310
		합계		-	569,240	170,750	739,990
74		1997-12-01			197,560	59,260	256,820
		합계		-	197,560	59,260	256,820
75		1998-06-01			18,050	5,410	23,460
76		1998-06-01			119,840	35,950	155,790
77		1998-12-01			119,840	35,950	155,790
78		1999-06-01			104,860	31,450	136,310
79		1999-12-01			104,860	31,450	136,310
80		2000-06-01			104,860	31,450	136,310
81		2000-12-01			104,860	31,450	136,310
82		2001-06-01			104,860	31,450	136,310
83		2001-12-01			57,670	17,300	74,970
84		2002-06-01			57,670	17,300	74,970
85		2002-12-01			52,430	15,720	68,150
86		2003-06-01			52,430	15,720	68,150
87		2007-12-01			52,430	15,720	68,150
88		2008-06-01			52,430	15,720	68,150
89		2008-12-01			52,430	15,720	68,150
90		2009-06-01			52,430	15,720	68,150
91		2009-12-01			52,430	15,720	68,150
92		2010-06-01			52,430	15,720	68,150
93		2010-12-01			52,430	15,720	68,150
94		2011-06-01			52,430	15,720	68,150
95		2011-12-01			52,430	15,720	68,150
96		2012-06-01			52,430	15,720	68,150
97		2012-12-01			52,430	15,720	68,15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7

구분	자동차명	과세처분일자	과세내역				합계금
			취득세	면허세	자동차세	교육세	
98		2013-06-01			52,430	15,720	68,150
99		2013-12-01			52,430	15,720	68,150
100		2014-06-01			52,430	15,720	68,150
101		2014-12-01			52,430	15,720	68,150
		합계		-	1,788,680	536,400	2,325,080
102		2014-12-01			50,360	15,100	65,460
		합계		-	50,360	15,100	65,460
103		1998-01-01		6,000			6,000
104		1998-01-01		12,000			12,000
105		1998-01-01		8,000			8,000
106		1999-01-01		8,000			8,000
107		1999-01-01		12,000			12,000
108		1999-01-01		8,000			8,000
109		1999-01-01		8,000			8,000
110		1999-01-01		8,000			8,000
111		1999-04-02		154,180			154,180
총합계				224,180	9,272,330	2,781,090	12,277,6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7

별지 2

목록

구분	자동차명	과세처분일자	과세내역				합계금
			취득세	면허세	자동차세	교육세	
1		1992-01-02	14,000				14,000
2		1994-01-01		27,000			27,000
3		1995-01-01		27,000			27,000
4		1996-01-01		27,000			27,000
5		1997-01-01		27,000			27,000
6		1998-01-01		27,000			27,000
7		1999-01-01		27,000			27,000
8		2000-01-01		27,000			27,000
9		2001-06-01			100,730	30,210	130,940
10		2001-12-01			50,360	15,100	65,460
11		2002-08-02			50,360	15,100	65,460
12		2002-12-01			50,360	15,100	65,460
13		2003-06-01			50,360	15,100	65,460
14		2003-12-01			50,360	14,890	65,250
15		2004-06-01			50,360	14,890	65,250
총합계			14,000	189,000	402,890	120,390	726,28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7

별지 3

관계 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서류의 송달)

①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소등"이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51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51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51조의3 (송달의 효력발생)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2조 (공시송달)

①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2.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
4.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17

제196조의4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6조의2(비과세)

② 법 제196조의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